

# 순천대학교 체육진흥관리위원회규정

제정 1986. 6. 17.  
개정 1992. 8. 13.  
개정 1995. 2. 8.  
개정 2017. 2. 23.  
개정 2018. 9. 12.  
개정 2019. 3. 20.

제1조(설치목적)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에 의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체육을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순천대학교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9.12.>

제2조(구성) ① 순천대학교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12.>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무처장·사무국장 및 체육부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각 3명 이내의 교직원 및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 3. 20.>

④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조의 1.(하부조직) ① 제4조의 기능수행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체육부를 둔다.

② 체육부에 부장 1인을 두며 부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이상의 체육전공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체육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체육부에는 이 대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 운동부를 둘 수 있으며 운동부의 지도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체육활동 육성 방안 강구
2. 교직원 및 학생체육의 지도관리
3. 위원회의 제 규정 개·폐
4. 운동부의 설·폐와 지도 육성
5. 체육시설의 설치와 관리
6. 체육특기자의 선정과 관리 및 지도
7. 위원회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9.12.>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고 정기회의는 2월과 8월에 열어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9.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9.12.>

제6조(체육부) 삭제

제7조(체육부장의 의무) 삭제

제8조(재정) 위원회 대학회계·학생회비·찬조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7. 2. 23.)

제9조(사무)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직원은 이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체육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학생처장이 관장한다.

부 칙 (1995. 2.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 2. 23.) (순천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⑨까지 생략

⑩ 순천대학교 체육진흥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정) 본문 중 “국비, 기성회비”를 “대학회계”로 한다.

⑪부터⑭까지 생략

부칙<제911호, 2018.9.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